

변경대비표(모자전환)

1. 대상 펀드: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
- 3) 운용역 변경
- 4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5) 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 예정일: 2024년 2월 22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)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 및 모투자신탁 추가

모투자신탁	자투자신탁	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80% 이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1.~7. <생략> 8. <신설>	1.~7. <좌동> 8. "모자형"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(모집합투자기구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5.<생략> 6. <신설> ③ <생략> ④ <생략> ⑤ <신설>	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5. <좌동> 6. 모자형 ③ <좌동> ④ <좌동>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

		<p>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
제14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15조(투자대상 자산 등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~11. <생략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p> <p>2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
제16조(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)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~9. <생략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3조제5항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제15조제2항 각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10. <생략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1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2. 환매조건부매수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<p>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<생략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~⑦ <생략></p>	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<좌동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~⑦ <삭제></p>
제23조의2(모투자신탁수익증권의 매수)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

		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
제24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~③ <생략>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	①~③ <좌동>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두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
제28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<생략>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	① <좌동>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<u>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</u>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
제35조(수익자총회)	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생략> ⑩ <신설> ⑪ <생략>	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<u>법령 및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</u>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좌동> ⑩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u> ⑪ <좌동>
제48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 <생략>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~5. <생략> ③~④ <생략>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	① <좌동>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<u>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</u>)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~5. <좌동> ③~④ <좌동>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</u>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

	<p>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⑦~⑫ <생략></p>	<p>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⑦~⑫ <좌동></p>
--	---	---

<투자설명서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p>[요약정보]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</p>	<p>1. 투자목적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2. 투자전략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은 자동화 & 인공지능, 인터넷 & 모바일, 클라우드, 전기차, 바이오테크, 핀테크, 블록체인, 사물인터넷,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 및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일부 구성합니다.</p>	<p>1.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2.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"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
<p>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	<p>[모자형 구조] - <신설></p>	<p>[모자형 구조] -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
<p>제 2 부.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</p>	<p>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 2 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,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(ETF 포함)에 60% 이상 투자합니다. 다만, ETF에 50% 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은 자동화 & 인공지능, 인터넷 & 모바일, 클라우드, 전기차, 바이오테크, 핀테크, 블록체인, 사물인터넷,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.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 및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일</p>	<p>이 투자신탁은 "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에 합산하여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

	<p>부 구성합니다. 예를 들어,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섹터(유틸리티 등) 또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으며,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장 국가 또는 섹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금리상승 국면에서는 원자재 등 실물관련 자산 등으로 물가방어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원자재 관련 자산 등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</p>	
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</p>	<p><신설></p>	<p>-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(ETF 포함)에 60% 이상 투자합니다. 다만, ETF에 50% 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은 자동화 & 인공지능, 인터넷 & 모바일, 클라우드, 전기차, 바이오테크, 핀테크, 블록체인, 사물인터넷,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.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 및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일부 구성합니다. 예를 들어,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섹터(유틸리티 등) 또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으며,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장 국가 또는 섹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금리상승 국면에서는 원자재 등 실물관련 자산 등으로 물가방어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원자재 관련 자산 등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</p>

3) 운용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정희석	송진용

4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5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 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통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송진용 본부장

2) 주요경력

(03년~06년) 대신증권/대신투신운용 마케팅, 주식운용

(06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

2. 운용현황(2024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10	251,324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006-03-20	128,723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013-10-21	119,191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5-09-18	93,275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6-05-09	76,047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9-02-02	71,894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007-02-09	59,080
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6-05-18	58,800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7-11-14	55,764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21	55,397

3. 운용성과(2024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11.39	-15.14	-21.14	30.23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8.78	-13.46	-20.62	6.40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0.32	3.12	-2.43	36.09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5.95	15.74	23.73	344.93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8.20	14.68	4.10	94.95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3.84	-10.32	-14.54	28.23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5.22	-4.40	-9.43	70.29
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7.34	-11.26	-21.53	-9.19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.24	4.24	19.71	-66.65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1.51	2.44	-0.82	70.06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모펀드 운용역 변경	모펀드 추가	모펀드 삭제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 OCIO-DB 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○	-	-	-	-
2	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자투자신탁(USD)(주식)	○	-	-	-	-
3	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H)	○	-	-	-	-
4	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○	-	-	-	-
5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1)	주 1)	-	-
6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1)	주 1)	-	-
7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1)	주 1)	-	-
8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1)	주 1)	-	-
9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1)	주 1)	-	-
10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1)	주 1)	-	-
11	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1)	주 1)	-	-
12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2)	주 1)	-	-
13	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2)	주 1)	-	-
14	미래에셋자산관리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주 3)	주 2)	-	-
15	미래에셋 3 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K-1 호(주식)	-	-	-	○	○
16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자투자회사 2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17	미래에셋대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○
18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H)	-	-	-	○	○
19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-	-	-	○	○
20	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○	○
21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○
22	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23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K-3 호(주식)	-	-	-	○	○
24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25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26	미래에셋코친디아포커스 7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○
27	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28	미래에셋퇴직플랜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29	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30	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○	○
31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○	○
32	미래에셋 G2 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-
33	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○
34	미래에셋합리적인 AI 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-	-	-	-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추가
- 3) 모투자신탁 삭제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4년 02월 22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- 1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[투자설명서]

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박경륜(책임), 주종륜(부책임)	주종륜(책임), 김민태(부책임)

2) 모투자신탁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주1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<신설></p>	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-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<p>[모자형 구조]</p> <p><신설></p>	<p>[모자형 구조]</p> <p>-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 EMP 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<신설>	<p>-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</p> <p><신설></p>	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</p> <p>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(ETF포함)에 60% 이상 투자합니다. 다만, ETF에 50% 이상 투자합니다.</p>

		<p>②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은 자동화 & 인공지능, 인터넷 & 모바일, 클라우드, 전기차, 바이오테크, 핀테크, 블록체인, 사물인터넷,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.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 및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일부 구성합니다. 예를 들어,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섹터(유틸리티 등) 또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으며, 4차산업(코어테크)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장 국가 또는 섹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금리상승 국면에서는 원자재 등 실물관련 자산 등으로 물가방어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범위 내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원자재 관련 자산 등에도 일부 투자합니다.</p> <p>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, 낮은 이익변동성을 가지며,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퀄리티 (Quality)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합니다.</p> <p>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① 국내 채권에 60%이상 투자합니다. ② 목표 듀레이션,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,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.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 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-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신설>	

주2)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<신설></p>	<p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-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p>

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<신설>	[모자형 구조] 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<신설>	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<신설>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, 낮은 이익변동성을 가지며,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리티 (Quality)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합니다. 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① 국내 채권에 60%이상 투자합니다. ② 목표 듀레이션,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,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.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 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신설>	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-미래에셋솔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주3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<신설>	[모자형 구조] 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<신설>	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<신설>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-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성과 건전한 재무구조, 낮은 이익변동성을 가지며, 경영진의 자본배분능력이 우수하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퀄리티(Quality)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합니다.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신설>	-미래에셋글로벌밸류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3) 모투자신탁 삭제

주1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- 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-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- 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[모자형 구조] - <삭제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-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- 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 <삭제>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- 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<삭제>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-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- 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 <삭제>

주2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[모자형 구조] - <삭제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- <삭제>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<삭제>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- <삭제>

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<투자비용 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<u>23.20</u>	<u>14.86</u>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자투자회사2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5</u>	<u>5.62</u>	<u>3.43</u>
미래에셋대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<u>23.49</u>	<u>14.74</u>
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H)	<u>2</u>	<u>3</u>	<u>18.24</u>	<u>11.87</u>
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<u>2</u>	<u>3</u>	<u>16.74</u>	<u>11.16</u>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6.05</u>	<u>16.82</u>
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5</u>	<u>6.38</u>	<u>4.26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3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<u>23.21</u>	<u>14.87</u>
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5</u>	<u>6.21</u>	<u>3.89</u>
미래에셋코친디아포커스7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<u>18.30</u>	<u>13.42</u>
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7.08</u>	<u>22.27</u>
미래에셋합리적인S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<u>3</u>	<u>4</u>	<u>10.55</u>	<u>6.31</u>

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벤처지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1.38</u>	<u>1.59</u>
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55</u>	<u>5.48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66</u>	<u>6.8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76</u>	<u>6.95</u>
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9.06</u>	<u>7.16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84</u>	<u>6.2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4	4	<u>5.59</u>	<u>6.31</u>

**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**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주종륜 팀장

2) 주요경력

(07년~08년) 미래에셋증권

(08년~13년) 미래에셋자산운용

(15년~15년) Allard Partners

(16년~19년) Briarwood Chase Management

(19년~20년) D&H투자자문

(20년~20년) 유니스토리투자자문

(20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

2. 운용현황(2024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1-05-31	503,799
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5-02-10	22,412
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22-08-01	7,382

3. 운용성과(2024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.61	21.65	8.66	54.74
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0.14	14.20	2.02	53.48
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8.03	16.51	13.63	24.79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김민태 매니저

2) 주요경력

(17년~20년) 디앤에이치투자자문

(20년~21년) 노무라증권

(21년~21년) StartSeed

(22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

2. 운용현황(2024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공모 펀드 나열)

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성과(2024.01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해당사항 없음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